

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고 제2022 - 1566호

아현제4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를 위한 공람공고

서울특별시 고시 제2006-243(2006.7.13.)호로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 고시되고 서울특별시 마포구고시 제2006-58호(2006.8.24.)호로 지형도면 고시, 서울특별시마포구고시 제2015-68(2015.4.16.)호로 주택재개발정비구역 변경 고시되었으며, 서울특별시마포구고시 제2007-67호(2007.9.3.)로 사업시행계획인가, 서울특별시마포구고시 제2018-79호(2018.7.5.)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된 아현제4주택재개발정비구역에 대해, 사업시행자로부터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신청이 있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9조 규정에 따라 관계서류를 토지등소유자 등에게 공람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2022. 12. 1.

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

1. 공람기간 : 2022. 12. 1. ~ 2022. 12. 16.

2. 공람장소

가.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12 마포구청 주택상생과(4층, ☎02-3153-9315)

나.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24길5 2동 3층 302호(아현동, 공덕자이상가)

아현제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(☎02-701-5133)

3. 공람내용

가. 정비사업의 명칭 : 아현제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

나.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

- 위치 :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현동 380번지 일대

- 면적 : 64,290.8㎡

다. 사업시행계획변경신청 사유 및 내역

『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』 제52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7조 제2항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기간, 자금계획 등의 변경

4. 사업시행기간 :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240개월

5.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

가. 성명 : 아현제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(조합장 임경환)

나. 주소 :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24길 5 2동 3층 302호(아현동, 공덕자이상가)

6.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 : 생략(공람장소의 비치 도서와 같음)**7. 건축계획 등에 관한 사항 : 변경없음****8. 법 제97조에 따른 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: 변경없음****9. 관계서류 : 생략(공람장소의 비치도서와 같음)****10. 유의사항**

본 공람공고에 대하여 아현제4주택재개발구역내 토지등소유자 또는 그 밖의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는 위 공람 기간 내 서울특별시 마포구청 주택상생과(☎02-3153-9315)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. 끝.

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고 제2022 -1587호

자동차관리법 위반 차량에 대한 운행정지명령 공고

「자동차관리법」 제24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22조, 제23조 규정에 근거하여 자동차 소유자의 운행정지 요청에 의한 운행정지 명령을 처분하였기에, 「자동차관리법」 제24조의2 제3항제4호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2. 12. 1.

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

1. 공고기간 : 2022. 12. 1. ~ 12. 16.

2. 대상 및 통지사항

가. 제 목	「자동차관리법」 위반 차량에 대한 운행정지명령 공고			
나. 대상자동차	주식회사 청×이×디 소유의 차량 81구607× 외 2대			
다. 법적근거	「자동차관리법」 제24조의2(자동차의 운행정지 등)			
라. 문 의 처	기관명	서울특별시 마포구청	담당부서명	교통행정과
	주 소	마포구 월드컵로 212(성산동)【☎(02)3153-9622, FAX(02)3153-9648】		

3. 공고내용

- 가. 자동차 소유자가 아닌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 동법 제24조의2제6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3조의2에 따라 등록번호판을 영치 할 수 있으며, 동법 제81조제7의2호에 따라 처벌을 받습니다.
- 나. 운행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해당 자동차를 계속 운행하는 경우 동법 제13조제3항 제3호에 따라 직권으로 말소될 수 있으며, 직권으로 말소등록 된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 동법 제80조제1호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습니다.
- 다. 동법 제24조의2제4항에 따라 운행정지를 명령한 자동차에 지방세 등 체납금 환수를 위해 공매가 가능합니다.
- 라.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마포구청 교통행정과(☎(02)3153-9622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☐ 운행정지명령 대상

연번	운행정지 상태	자동차 등록번호	차대번호	차명	소유자명	불법운행된 사유	주요운행지역
1	등록	29호702*	KNA*541BBLA07*901	K5	(주)렌*카메*아	기타	모름
2	등록	81구607*	KMFG*17AP3C18*266	마이티	주식회사 청*이*디	기타	전국
3	등록	83두907*	KMFG*17AP4C19*497	마이티	주식회사 청*이*디	기타	전국